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148

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 박정하·최보윤·김상훈

박상웅 · 서일준 · 엄태영

정동만 • 이인선 • 박덕흠

한지아 · 신성범 · 김재섭

김용태 · 조은희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,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.

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,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,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,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,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

세,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제121조의33, 제121조의34, 제121조의 35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33제1항 중 "2026년"을 "2031년"으로 한다.

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6년"을 "2031년"으로 한다.

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6년"을 "2031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21조의33(기회발전특구의 제121조의33(기회발전특구의 창 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 -----2031 감면)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 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년----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(이 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업" 이라 한다)으로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 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, 기회 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 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. ② ~ ⑩ (생 략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 제121조의34(기회발전특구로 이 제121조의34(기회발전특구로 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 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 ① 수도권에서 3년(중소기업은 2년)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

동산(이하 이 조에서 "종전사 업용부동산"이라 한다)을 2026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 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양도차 익상당액"이라 한다)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제121조의35(기회발전특구집합투 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)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(이하 이 조에서 "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(전용계좌의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)은 「소

	<u>20</u>
<u> 31년</u>	
1. • 2. (현행과	같음)
(2 0)	C P /
② ~ ④ (현행	
•	과 같음)
② ~ ④ (현행 세121조의35(기회	과 같음)
② ~ ④ (현행 제121조의35(기회 자기구 투자자	과 같음) 발전특구집합투
② ~ ④ (현행 제121조의35(기회 자기구 투자자	과 같음) 발전특구집합투 에 대한 과세특
② ~ ④ (현행 제121조의35(기회 자기구 투자자	과 같음) 발전특구집합투 에 대한 과세특
② ~ ④ (현행 제121조의35(기회 자기구 투자자	과 같음) 발전특구집합투 에 대한 과세특
② ~ ④ (현행 제121조의35(기회 자기구 투자자	과 같음) 발전특구집합투 에 대한 과세특
② ~ ④ (현행 제121조의35(기회 자기구 투자자	과 같음) 발전특구집합투 에 대한 과세특
② ~ ④ (현행 제121조의35(기회 자기구 투자자	과 같음) 발전특구집합투 에 대한 과세특
② ~ ④ (현행 제121조의35(기회 자기구 투자자	과 같음) 발전특구집합투 에 대한 과세특
② ~ ④ (현행 제121조의35(기회 자기구 투자자	과 같음) 발전특구집합투 에 대한 과세특

독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 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 고,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 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 지 아니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